

계 량 에 관 한 법 률 일 부 개 정 법 률 안 (대 안)

의 안 번 호	20253
------------	-------

제안연월일 : 2026. 7. .

제 안 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 대 안 의 제 안 경 위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	발의일	심사경과
계 량 에 관 한 법 률 일 부 개 정 법 률 안	2214372	김원이의원	2025.11.19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 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3.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 쳐 소위 회부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 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2026.5.19.) 상 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2216155	김원이의원	2026.01.19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 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5.19.) 상 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 회부
	2216253	김원이의원	2026.01.22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 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2026.5.19.) 상 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2217779	이철규의원	2026.03.26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 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2026.5.19.) 상 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가.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
(2026. 5. 19.)에서 위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
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나.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 5. 20.)에서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산
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발전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계량기 형식승인·검정·재검정, 정량표시상품
관리 및 측정기기 교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반도체·바이오·항공우주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정밀
측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산업계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
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신기술 기반 계량기에
대하여는 현행의 획일적인 형식승인·검정·재검정 체계만으로는 탄
력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가정용 저울 등 형식승인 제외 계량기의 유통 및 활용 확대에
따라 상거래용 사용 방지 및 사후관리 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정량표시상품의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에 미달하는 사례가 발생
함에 따라 소비자 신뢰 제고 및 관리체계 정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
음.

이에 산업계량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교정 측정기기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형식승인·검정·재검정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형식승인 제외 계량기에 대한 표시 및 사후관리 제도를 정비하고, 정량표시상품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계량 및 측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업계량”의 정의를 신설하고, 산업계량 관련 사업 추진, 산업계량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산업계량지원센터 지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4까지 신설).

나. 형식승인·검정·재검정을 받는 것이 기술적·정책적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계량기에 대하여 형식승인·검정·재검정의 면제 또는 재검정을 교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제23조 및 제24조).

다. 자율교정 측정기기의 종류, 교정주기 및 교정절차 등을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교정 제도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40조).

라. 형식승인 제외 계량기에 대하여 상거래용 또는 증명용이 아니라는 표시를 의무화하고, 표시 정정 요구, 자료 제출 요구, 소비자감시원의 확인업무 및 벌칙·과태료 규정을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함(안 제14조의2, 제50조, 제54조, 제73조 및 제76조).

마. 정량표시상품에 대한 평균량 기준을 도입하고, 정량표시상품 전담 기관 지정 및 위반사실 공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량표시상품 관리체계를 정비함(안 제41조, 제42조의2, 제51조 및 제73조).

바. 계량 및 측정 관련 정책을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국가표준심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정기검사 위탁 및 계량검사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 제57조의2 및 제64조).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업의 선진화 및”을 “산업활동 과정에서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며”로 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산업계량”이란 제조·공정·시험·품질관리 등의 산업활동 과정에서 어떤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형식승인에서 제외되는 계량기의 표시사항 등) ① 형식승인에서 제외되는 계량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계량기가 상거래용 또는 증명용이 아니라는 취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형식승인에서 제외되는 계량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제2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표시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표시의 정정을 요구받는 자는 개선 결과를 산업통

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계량기의 기술적 특성, 구조 및 사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식승인을 받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계량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에 해당하는 경우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량기의 기술적 특성, 구조 및 사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검정을 받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계량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검정을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교정을 받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량기의 기술적 특성, 구조 및 사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재검정을 받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계량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재검정을 면제할 수 있다.

- ⑤ 제1항 단서에 따른 교정으로 갈음할 수 있는 계량기의 교정절차, 교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제23조제2항”을 “제23조제3항”으로 한다.

제3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시·도지사는 정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35조제5호 중 “제23조제2항”을 “제2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24조제2항”을 “제24조제3항”으로 한다.

제38조 다음의 “제6절 측정기기의 교정”을 삭제한다.

제3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산업계량 지원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산업계량 관련 사업의 추진)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계량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정기준의 조사·연구·개발
2. 교정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
3. 기업의 측정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4. 교정 및 측정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및 교육

제39조의3(산업계량 활성화를 위한 시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계량 활성화를 위하여 표준물질의 개발, 측정표준의 확립 및 유지, 측

정방법의 연구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39조의4(산업계량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업종별 산업계량 관련 연구개발, 기업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산업계량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측정기기의 자율교정) 산업통상부장관은 교정대상 측정기기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교정할 필요가 있는 자율교정 측정기기의 종류,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교정주기, 교정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 후단의 “한다”를 “하며, 실제 내용량의 평균은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로 한다.

제3장에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정량표시상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정량표시상품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량표시상품의 관리에 관한 정책 연구
2. 정량표시상품의 시판품 조사
3. 그 밖에 정량표시상품의 관리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⑤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정량표시상품사업자”를 “정량표시상품사업자, 계량기 양도 관련자(판매업자,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수입대행업자 등 계량기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를 중개·대행하는 업무에 관련된 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51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2조제1항에 따라 정량의 표시를 명하거나 표시의 정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54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형식승인 및 검정 여부 확인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계량·측정 정책의 심의) 산업통상부장관은 계량기 및 측정기기의 신뢰성과 적합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표준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

다.

1. 계량기 및 측정기기의 관리·기준의 신뢰성과 적합성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계량 및 측정 관련 정책의 중요 사항

제64조의 제목 “(계량검사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계량검사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교육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계량검사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업무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량검사공무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66조제1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9조의4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7. 제43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제70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3조에 따라 정량표시상품의 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

제73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표시의 정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73조제7호 중 “정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표시한 자”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정량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표시한 경우

다. 실제 내용량의 평균이 제품에 표시된 양에 미달한 경우

제76조제2항제2호 중 “제6조제5항 또는 제42조제2항”을 “제6조제5항, 제14조의2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u>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 ----- ----- <u>산업활동 과정에서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며</u>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u><신설></u> 2. 3.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1의2. “산업계량”이란 제조·공정·시험·품질관리 등의 산업활동 과정에서 어떤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2. 3.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형식승인에서 제외되는 계량기의 표시사항 등) ① 형식승인에서 제외되는 계량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계량기가 상거래용 또는 증명용이 아니라는 취

제15조(형식승인의 면제) ①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계량기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시 형식승인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형식승인에서 제외되는 계량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제2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표시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표시의 정정을 요구받은 자는 개선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형식승인의 면제) ① ---

-----.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계량기의 기술적 특성, 구조 및 사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식승인을 받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계량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② · ③ (생략)

<신 설>

제28조(검정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정 기준을 위반하여 검정을 한 경우

4. ~ 6. (생략)

계량기에 대하여는 재검정을 면제할 수 있다.

③·④ (현행 제2항, 제3항과
같음)

⑤ 제1항 단서에 따른 교정으로 갈음할 수 있는 계량기의 교정절차, 교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검정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 ① -----

[illegible]

1. ~ 2. (현행과 같음)

3. 제23조 제3항-----

--

4. ~ 6. (현행과 같음)

제30조(정기검사) ① ~ ④ (생략)

<신 설>

제35조(양도 등의 제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하기 위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의 표시가 곤란한 계량기로서 질량이 1천밀리그램 이하의 선분동(線分銅)·판상분동(板狀分銅)인 계량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략)

5.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

6. 제24조제2항에 따른 재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

제30조(정기검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도지사는 정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35조(양도 등의 제한) -----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23조제3항-----

6. 제24조제3항-----

7.·8. (생 략)

제6절 측정기기의 교정

<신 설>

<신 설>

<신 설>

7.·8.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장의2 산업계량 지원

제39조의2(산업계량 관련 사업의 추진)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계량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정기준의 조사·연구·개발
2. 교정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
3. 기업의 측정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4. 교정 및 측정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및 교육

제39조의3(산업계량 활성화를 위한 시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계량 활성화를 위하여 표준물질의 개발, 측정표준의 확립 및 유지, 측정방법의 연구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측정

<신 설>

표준 대표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39조의4(산업계량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업종별 산업계량 관련 연구개발, 기업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산업계량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

제40조(측정기기의 자율교정) ① <u>교정대상 측정기기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교정할 필요가 있는 자율교정 측정기기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② <u>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율교정 측정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교정주기, 교정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u> 제41조(정량표시상품) ① <u>정량표시상품을 제조, 수입,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정량표시상품사업자”라 한다)는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표시상품사업자의 상호, 성</u>	<u>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u> 3. <u>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u> 4. <u>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u> ④ <u>지원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40조(측정기기의 자율교정) 산 <u>업통상부장관은 교정대상 측정기기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교정할 필요가 있는 자율교정 측정기기의 종류,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교정주기, 교정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u> 제41조(정량표시상품) ① ----- ----- ----- ----- ----- -----
---	---

명 및 정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 하며, 실제 내용량
의 평균은 제품에 표시된 양보
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정량표시상
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
· 인력 ·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
인 또는 단체를 정량표시상품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량표시상품의 관리에 관한
정책 연구

2. 정량표시상품의 시판품 조사

3. 그 밖에 정량표시상품의 관
리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산업
통상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⑤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비법정단위의 단속, 교정대상 측정기기의 교정이력 확인, 정량표시상품의 정량관리 및 불법계량기의 유통방지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제50조(조사 등) ① -----

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사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조업자등, 자체정기검사사
업자, 정량표시상품사업자, 계
량을 수행하는 자 및 계량기
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자료
의 제출 요구

2. · 3. (생략)

② ~ ⑤ (생략)

제51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산업
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반
행위와 관련된 사실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1. · 2. (생략)

<신설>

② (생략)

-----.

1. -----
정량표시상품사업자, 계량기
양도 관련자(판매업자, 판매
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수입
대행업자 등 계량기의 소유권
을 이전하거나, 이를 중개·
대행하는 업무에 관련된 자를
말한다)-----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1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

-----.

1. · 2. (현행과 같음)

3. 제42조제1항에 따라 정량의
표시를 명하거나 표시의 정정
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
지 아니한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제54조(소비자감시원)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③ ~ ⑥ (생략)

<신설>

제64조(계량검사공무원의 인사관리) (생략)

<신설>

제54조(소비자감시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형식승인 및 검정 여부 확인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57조의2(계량·측정 정책의 심의) 산업통상부장관은 계량기 및 측정기기의 신뢰성과 적합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표준심의회
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1. 계량기 및 측정기기의 관리·기준의 신뢰성과 적합성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계량 및 측정 관련 정책의 중요 사항

제64조(계량검사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교육훈련)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계량검사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업무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

제66조(청문)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신설>

<신설>

②·③ (생략)

제7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2. (생략)

<신설>

4.·5. (생략)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여 계량검사공무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66조(청문)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제39조의4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7. 제43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②·③ (현행과 같음)

제7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제) -----

-----.

1.·2. (현행과 같음)

3. 제43조에 따라 정량표시상품의 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

4.·5. (현행과 같음)

제73조(벌칙) -----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4. ~ 5. (생략)

6.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표시한 자

<신설>

<신설>

<신설>

제76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4.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표시의 정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 6. (현행 제4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정량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내용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표시한 경우

다. 실제 내용량의 평균이 상품에 표시된 양에 미달한 경우

제7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제6조제5항 또는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u>	2. <u>제6조제5항, 제14조의2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u> ----- -----
3. ~ 22. (생략)	3. ~ 22.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